

보호방식 적용방안 개정 신규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| 개 정 사 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 중 략 ></p> | <p>< 중 략 ></p> | |
| <p>16.0 신재생발전기(전력변환장치 기반) 및 관련 설비 보호방식</p> <p>16.1 일반원칙</p> | <p>16.0 신재생발전기(전력변환장치 기반) 및 관련 설비 보호방식</p> <p>16.1 일반원칙</p> | |
| <p>< 중 략 ></p> | <p>< 중 략 ></p> | |
| <p>16.1.2 신재생발전기의 인버터 내부 보호는 설비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계통연계기준을 만족할 경우 제작사가 제시한 보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| <p>16.1.2 단독계통 검출을 위한 별도의 전압,주파수 보호장치를 설치한다. 단, 주파수변화율계전기(ROCOF)는 송전망 연계 계통에서는 미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16.1.3 신재생발전기의 인버터 내부 보호는 설비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계통연계기준을 만족할 경우 제작사가 제시한 보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| <p>· 신재생발전기 보호방식 보완</p> |
| <p>< 중 략 ></p> | <p>< 중 략 ></p> | |
| <p>16.4 신재생발전기 연계선로 보호</p> <p>16.4.1 5.0 345kV 송전선 보호방식 및 9.0 154kV 송전선 보호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 단, 고장전류 크기, 단독운전 가능여부 등에 따라 후비보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| <p>16.4 신재생발전기 연계선로 보호</p> <p>16.4.1 345kV 연계선로는 5.0 345kV 송전선 보호방식을 적용한다.</p> | |

| 현 행 | 개 정 | 개 정 사 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16.4.2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 “전력계통운영기준” 제4.6.1조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고장 제거가 가능한 동작속도를 구비한다.</p> <p>10.4.3 차단기 차단실패 보호(Breaker Failure Protection)기능을 구비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중 략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중 략 ></p> | <p>16.4.2 154kV 연계선로는 9.0 154kV 송전선 보호 방식을 적용한다. 단, 전류차동보호계전기는 이중화하여 구성한다.</p> <p>16.4.3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 “전력계통운영기준” 제4.6.1조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고장제거가 가능한 동작속도를 구비한다.</p> <p>10.4.4 차단기 차단실패 보호(Breaker Failure Protection)기능을 구비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중 략 ></p> <p>16.5 신재생발전기 연계모선 보호</p> <p>16.5.1 345kV 연계모선은 7.0 345kV 모선보호 방식을 적용한다.</p> <p>16.5.2 154kV 연계모선은 10.0 154kV 모선보호 방식을 적용한다. 단, 적용 곤란 시 별도의 순시 동작 가능한 보호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중 략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<2023. 12. 1></p> <p>이 기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</p> | <p>· 신재생발전기 보호방식 보완</p> |